

청일전쟁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분석

- 공사관 활동을 중심으로 -

金 顯 哲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1. 머 리 말
2. 구한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조선 문제
3. 구한말 미국의 對韓 인식과 전시 중립정책의 전개
4. 구한말 미군의 파견과 한미관계의 전개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지 12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과연 구한말 미국이 조선의 위기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대를 파견할 능력과 이에 대비한 전략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는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국권상실의 위기에 처한 조선에게 조미수호조약의 '주선' 조항에 기대를 걸었던 미국이 과연 실질적으로 외교적, 군사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미국의 대동북아 지정학적, 전략적 고려사항 중 조선이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반도가 외세열강의 전쟁터가 된 청일전쟁시기 조선이 미국에 가졌던 기대에 비하여 미국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이 시기 한국과 미국간에는 1882년 조미수호조약상 '주선' 조항의 해석과 미국의 개입 내지 중재 여부, 그리고 청일전쟁이후 청-한 관계의 재조정에 따른 조선의 독립국가 인정여부 등을 둘러싸고 커다란 시각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전개과정에서도 청일전쟁 발발 직전과 직후 주선의 역할과 범위,¹⁾ 및 조선 국내정치에의 개입을 둘러싸고 본국 정부와 현지 공사관간의 이견과 갈등이 지적될 수 있다.²⁾ 청일전쟁 당시 미국의 '주선'

1) 이와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선이 조약상의 의무를 완수하였으며<Dennett, Tyler, "American Good Offices in Asi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 1(Jan., 1922)>, 최소한도로 개입하면서 중립을 지켰다<Lee, Yur-Bok, "American Policy toward Kore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o. 23(Korean Research Center, 1965)>고 보는 견해와 당시 미국의 주선은 매우 형식적이며 외교적 조치에 불과하였으며<최문형,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서울: 지식산업사, 2001)>,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조선 진출을 도왔다고 보는 견해<이보형, "청일개전 직전의 미국의 거중조정과 한국", 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회, 『한미수교 100년사』(서울: 국제역사학회 한국위원회, 1982)> 등으로 대립된다.

2) 이와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이 시기 미국 본국정부와 주한 미 공사는 조선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제적 중재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견해<Oh Bonnie B., "John M. Sill, U. S. Minister to Korea, 1894-1897: A Reluctant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Mediation", Andrew C. Nahm(ed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merican-Korean Relations, 1866-1976*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9), pp. 91-109>, 그리고 이와 대립적으로 주한 미국공사들은 조선 궁정에 관여함으로써 미 본국 정부의 지시들을 무시하였으며, 일본의 대조선 정책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는 견해<Palmer, Spencer J., "Introduction", Palmer, Spencer J. (ed.),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ume II, The Period of Growing Influence 1887-1895* (Los Angeles

에 대해 국무성이 ‘비개입’ 내지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면, 주한 미 공사는 현지외교관의 자율성내에서 사안에 따라 ‘개입주의’적 양상을 띠어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고립주의, 비개입주의 또는 국제주의, 문호개방 등 한 측면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조선 문제에 대해 양자의 복합된 측면으로 설명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시 조선에 파견된 쉴(John Mahelm Berry Sill) 및 알렌(Horace N. Allen) 등 미국 외교관들은 조선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의 확보를 제1차적으로 추구한 반면, 고종 등 조선측은 ‘대미 활용’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들 외교관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당시 미국 외교관들이 조선에서 선교사 및 외교관 등 미국인의 보호,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현지 외교관의 재량 범위내에서 가능한 공사관 호위 병력을 대동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고종 및 일부 정치인의 신변을 보호함으로써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으나, 미 본국 정부가 조선을 지원할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적극 중재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조선측으로서는 주한 미국 공사에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보였으며, 이들을 통해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관여를 유도해내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은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조선에 왜 대규모의 병력 파견을 통해 조선 정부를 지원하지 않았는가? 아시아 및 조선의 전략적 위상과 군사적 가치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현지 주한미국공사관은 어떻게 파악하였는가? 그리고 조선에 파견된 일부 미군병력은 주한 미공사의 지시 아래 고종의 신변보호 등 조선 궁정의 변동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등의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구한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대한반도 전략을 재조명하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청일전쟁시기 주한 미국공사관과 본국 정부간에 오고간 전문 등 외교문서 등을 통해 당시 미국의 중립 정책과 미공사관 호위병력의 파견과정, 그리고 그것이 한미관계에 미친 파급효과

: Univ. of California Press, 1963), pp. 1-8> 등으로 구별된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

2. 구한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조선 문제

19세기 후반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이 시기까지 전통적 고립주의 및 비개입주의라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커다란 틀내에서 아시아 지역국가들에 대해 ‘문호개방(open-door)’ 정책을 추구하였다. 19세기 후반의 미국은 국내적으로 남북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부 개척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 해외로 팽창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미 본토에 인접한 멕시코만, 카리브해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파나마 운하와 그 주변 국가들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의 안정이 1차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미 본토 및 호놀룰루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무역로를 중시하였으며,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 나갔다. 미국이 아시아로 적극 진출하게 된 배경에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자유무역의 강조, 사회 진화론, 동양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오리엔탈리즘 등의 이데올로기적 요소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태평양을 내해로 간주한 미국은 중국과 그 주변국가 등으로 가는 중간 경유지로서 하와이가 필요했으며, 필리핀이 그 전초기지로써 전략적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1898년 미-스페인 전쟁의 결과, 미국은 필리핀을 병합하게 되어 동북아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이 지역내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괌과 미드웨이 섬 등 태평양 연안 섬들

3) 본문의 내용중 청일전쟁 당시 미국의 정책과 주한 미국공사의 활동 부분에 관한 부분의 일부는 2001년 12월 필자가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년도 연례학술회의 외교사분과에서 발표한 논문 “청일전쟁·갑오개혁 시기 조선주재 미국 외교관들의 대조선관” 중 관련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의 확보가 전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⁴⁾

이와 같이 19세기말 20세기초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상업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크게 증대함에 따라,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및 전략은 19세기 후반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경쟁상대인 영국 등 유럽 열강의 영향권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 시장의 진출과정에서 다른 열강과의 기회 균등의 보장, 중국 현지에 진출한 자국 선교사, 기업인 및 외교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내지 함포외교의 전개, 그리고 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서 러시아 또는 일본에 대응하기 방안에 마련 등에 중점이 두어졌다.⁵⁾

이러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및 전략들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말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군사적 관심이 증대되었지만, 해군성 등 미군 지도자들은 미국 본토에 인접한 멕시코만과 대서양의 방위를 최우선시 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미 해군은 그동안의 '연안전수방어'와 해외교역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오대양에서 적 함대를 격침할 수 있는 함대건설을 추진하였다.⁶⁾ 그렇지만, 19세기말까지 미 해군은 자국의 함대가 대서양-태평양

4) Nester, William R., *Power across the Pacific: A Diplomatic History of American Relations with Japan*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6), pp. 59-62.

5) Challenger, Richard D., *Admirals, General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898-1914*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p. 198-212, 228-231.

6) 19세기 후반 미국의 병력 현황을 보면, 1866년 동원가능한 미군 병력이 51,606명이었으나, 1869년 35,036명, 1870년 32,788명, 그리고 1874년에는 25,00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다. 1898년 미-스페인 전쟁당시 미 육군은 28,183명의 장교·사병으로서 연안방위를 전담하였으며, 대부분의 병력이 미 대륙내에 산재되어 있었다. 해군의 경우에도 1898년 10,000-15,000톤급의 무연탄 연료함정 11척과 15,000명의 병력에 불과하였다. Bernardo, C. Joseph, Major Ordnance Corps & Eugene H. Bacon, *American Military Policy: Its Development since 1775*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7), pp. 274-278; Porter E. B. ed., *Sea Power: A Naval History*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 1981), pp. 155-163, 187-197; 문영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사상사-국가군사전략사상사를 중심으로』(서울: 을지서적, 1999), pp. 174-180.

양 지역으로 분할될 경우 유럽해군의 공격에 취약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로 대서양 지역에 함정들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아-태지역에는 소규모 함정을 배치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실제 해군의 작전 운영과 해군력 배치현황을 보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 해군의 정박 및 수리시설이 부족하였다.⁷⁾

둘째,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크게 국무성의 대중국 문호개방정책의 고수, 또는 동북아에서 미·일간 협력관계의 유지라는 외교적 목표 등에 따라 좌우되거나 결정되는 등 국무성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관심사항을 보면, 20세기초까지도 이 지역내에서 러시아를 사실상 가상 적으로 상정하였으며, 러일전쟁 이전까지는 만주내에서 미·러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세기초 러일전쟁을 분기점으로 하여 미국은 러시아를 대신하여 일본과의 충돌에 대비하는 것을 주요 전략적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19세기말 필리핀의 병합이후 미국은 필리핀내 수비만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 기지의 확보와 적절한 방위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러일전쟁이후시기에 이르러서야 미국은 하나의 강대국으로서 일본의 성장과 그것이 미국의 안보, 특히 필리핀 방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⁸⁾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전반적 틀하에서 당시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중국, 일본 및 조선의

7) Challenger(1973), op. cit., pp. 248-254. 19세기 중·후반 아시아함대 및 태평양함대를 포함하여 미 해군 함대의 구분과 작전 영역, 그리고 원양순항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berts, Stephen S., "An Indicator of Informal Empire: Patterns of U.S. Navy Cruising on Overseas Stations, 1869-1897", in Symonds, Craig L., et. als. (eds.), *New Aspects of Naval History : Selected Papers Presented at the Fourth Naval History Symposium, United States Naval Academy, 25-26 October 1979* (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1), pp. 253-267을 참조하기 바람.

8) Porter(1981), op. cit., pp. 190-193; Challenger(1973), op. cit., pp. 180-181, 227-231.

순으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경우 1890년대 후반이후 미국에게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서 매력을 지녔으며, 미국 기업들의 철도건설과 미국면직물의 수출시장으로 주목되었다. 미국내에서 중국시장의 보호 압력이 고조되고 대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1899년 9월 6일 미국의 헤이(John Hay) 국무장관은 당시 중국에 진출한 영국, 독일, 러시아 정부에 ‘중국내 세력범위 또는 조차지에서 그 어떤 국가도 조약항 또는 기득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 문호개방에 관한 각서’(제1차 각서)를 전달하였다.⁹⁾

그후 중국에 의화단란이 발발하여 1900년 6월에서 8월 사이 북경주재 외국 공사관에 대한 포위 공격이 시작되자, 일본과 영국에 이어 미국은 2,500명의 미군을 파병하였으며, 그 결과 베이징내에 미국 공사관 등 외국 대사관 및 외교관들의 포위, 고립은 해소되었다.¹⁰⁾

의화단란의 진압이후에도 미국은 북경에 약 1개 중대 규모의 공사관 호위병력을 상주시켰으며, 미 해군 함정은 중국 연안에서 초계활동을 계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안 항구나 내륙 강가를 방문하였다. 당시 미군은 중국내 미국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개신교의 포교활동을 지원하며, 미국 기업가들과 무역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중국내 철도건설공사의 분쟁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러시아의 동향을 주시해온 미국은 1900년 러시아가 만주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자 러시아를 문호개방정책의 주된

9) 당시 미국이 제시한 문호개방각서의 주요 내용과 유럽 열강의 반응에 대해서는 Bartlett, Ruhl J., *The Record of American Diplomacy: Documents and Readings in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New York: Alfred A., Knopf, 1956), pp. 408-413을 참조하기 바람.

10) 의화단란 당시 미군의 전투상황과 파견된 병력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eport of Secretary of the Navy John D. Long(Nov. 17, 1900)", "Report of the Chief of the Bureau of Navigation(Oct. 1, 1900)" 및 "Report of the Surgeon-General, U.S. Navy, Dr. W.K. Van Reyden(Oct. 1, 1900)", in Navy Department. *Annual Report of the Navy Department for the Year 1900*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0), pp. 3-6, 448-50, 1059-60을 참조하기 바람.

적대국가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인식하였다.¹¹⁾

그후 미국의 대중국 시장진출이 크게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은 문호개방정책의 고수를 위해 일본에 의존하였으며, 조선과 만주에서 러시아의 진출을 막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상당수 정책결정자들은 1902년에 체결된 제1차 영·일동맹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아 환영하였으며, 1904-5년 러일전쟁 당시에는 러시아측의 승리를 우려하여 일본을 동북아에서 미국의 파트너로 간주하였다.¹²⁾

러일간의 개전이전에 미국은 일본측이 러시아에 대해 주장한 일련의 제안들이 중국의 영토보전 및 기회균등에 입각한 것이어서 당시 미국의 정책과 부합된다고 여겨졌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헤이 미국무장관은 당시 조선주재 알렌(Horace N. Allen) 공사에게 미국은 엄중 중립을 지킬 것이며, 조선주재 미국 공사관을 철수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루트(Elihu Root) 국무장관 등 국무성 관리들도 러일전쟁의 발발 당시 반러, 친일적 경향을 띠었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과 미국은 1905년 7월 29일 태프트·가쓰라 각서를 맺어, 일본의 조선 경영 및 합병을 묵인하는 대신 미국의 필리핀 경영권을 인정받았다.¹³⁾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대중국, 대일본 정책과 비교해 볼 때, 19세기 후반 당시 조선은 미국에게 하나의 시장으로서 중요성을 띠기에는 너무 빈곤하였으며, 외세의 침입에 취약하여 미국이 상당한 정도로 군사적 뒷받침 없이는 관여하기가 어려웠으며, 당시 미국 정부로서는 그럴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¹⁴⁾

11) Challenger(1973), op. cit., pp. 198-227.

12) 19세기 중반부터 청일전쟁을 거쳐, 20세기 초반까지 동북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팽창 정책을 일본과의 외교관계의 형성 측면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서 Nester(1996), op. cit., pp. 13-104를 들 수 있다.

13) 태프트·가쓰라 각서에서 당시 미국과 일본간의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Bartlett(1956), 앞의 문서집, p. 414를 참조하기 바람.

구한말 한미관계의 공식 출범을 상징하는, 1882년 5월 22일 조인되고 체결된 朝美修好條約 제1조에 “만일 다른 나라가 일방 정부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고 또는 업신여기는 일이 있게 되면 (다른 나라는) 그 사건의 통지를 받는대로 주선(周旋)함으로써 그 우의가 깊음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¹⁵⁾ 이후 조선 정부는 위 조약내 언급된 ‘주선’ 조항에 의거하여 다른 국가와의 분쟁시 미국 정부가 주선하는 등 적극 개입할 것으로 기대하였다.¹⁶⁾ 또한 조미수호조약체결이후 고종은 조선에 체류중인 다른 외교관보다도 주한미국 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선 정부는 조선 군대의 근대화를 위해 미국 장교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교육의 근대화를 위해 서양 학문과 기술을 가르칠 미국인 선생들을 고용하였다.¹⁷⁾ 그리고 1880년대 후반에 조선 정부는 최초로 미국에 상주외교사절을 파견하고 현지에 공사관을 설립하는 등 미국과의 적극적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4) Oh Bonnie B.(1979), op. cit., p. 93 ; 최문형(2001), 앞의 책, pp. 114-115.

15) 朝美修好條約에서 미국측의 주선(또는 거중조정<居中調停>으로 번역)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상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I, There shall be perpetual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King of Chosen and the citizens and subjects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 *If other Powers deal unjustly or oppressively with either Government, the other will exert their good offices, on being informed of the case, to bring about an amicable arrangement, thus showing their friendly feelings.*

16) 개화기 조선내의 우호적 대미인식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류영익, “개화기의 대미인식”, 류영익·송병기·양호민·박희섭, 『한국인의 대미인식: 역사적으로본 형성과정』(민음사, 1994), pp. 55-141을 참조하기 바람.

17) No. 526. H. N. Allen to Secretary of State, Feb. 12. 1894. Palmer, Spencer J. (ed.),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ume II, The Period of Growing Influence 1887-1895.*(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63) (이하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로 약칭함), p. 182. 구한말 미국 군사고문의 파견과 조선의 강병 노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이광린, “미국 군사교관의 초빙과 연무공원”, 『한국개화사연구』(서울: 일조각, 1965);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0)를 참조하기 바람.

반면,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정책을 보면, 외교적으로는 1880년대 후반이후 청, 일 등 조선을 둘러싼 열강간의 각축속에서 어느 특정 국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부터 미국은 청의 종주권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¹⁸⁾ 그렇지만 주한 미 공사직은 경시되어서 여러 차례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않아 공석인 채로 있었으며, 조선 정부가 요청한 군사고문 파견문제도 제때 처리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조선의 근대화 노력을 지원하지는 않았다.¹⁹⁾ 이와 같이 구한말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며 비개입주의의 양상을 띠게 된 데에는 대통령, 국무성, 해군성 등 당시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조선(한반도)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주요한 지정학적 지역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앞에서 살펴본 중국, 일본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낮았으며, 한반도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측면을 사실상 반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미국은 이 시기에 조선을 포함한 동북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군사적 여유와 발상을 갖지 못하였다.

18) Department of State U. S. A., *A Historical Summary of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84-1962* (Washington: Historical Office Bureau of Public Affairs, 1962), pp. 10-11; Palmer(1963), op. cit., pp. 2-7.

19) 미 국무장관 프렐링하이젠(Frelinghuysen)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1년이상 일방적으로 방치하였으며, 1884년 11월에 가서야 조선측의 교관파한 문제를 링컨(Lincoln) 미 국방장관에게 조회하였다. 1887년 10월 18일까지도 베이야드(Bayard) 국무장관은 주한공사 던스모어(Dinsmore)에게 파견될 교관의 급여와 여비부담문제를 확인할 정도였으며, 겨우 3명의 미국 교관은 1888년 4월에 가서야 조선에 도착하였다. Oh Bonnie B(1979), op. cit., p. 94; Palmer(1963), op. cit., p. 1.

3. 구한말 미국의 對韓 인식과 전시 중립정책의 전개

(1) 청일전쟁시기 조선의 독립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

청일전쟁 당시 조선의 국제적 지위, 특히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문제에 대한 견해는 청국과 조선의 입장이 상이하였으나, 미국은 계속 조선이 독립국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 청일전쟁 발발직전시기에 주한 오토리 다이스케(大鳥圭介) 일본 공사가 고종에게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문의하자, 이에 대해 고종은 조선이 내정과 외교에 있어 독립되어 있다고 통고하였으며, 이 점은 주한 미국공사를 통해 미 본국에도 보고되었다.²⁰⁾ 그러나 일본측의 영향으로 조선이 청국과 체결한 기존의 모든 조약을 폐기하였으며, 당시 주일공사는 청한관계가 형식적이며, 이후로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할 것임을 미국측에 통고하였다. 당시 조선측은 쉐 주미공사에게 이러한 조청간 관계의 변화, 특히 조청간 기존 조약의 폐기 사실을 미국 본국 정부에 통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²¹⁾

조선내에서 청·일의 영향력 변화를 반영하는 양상의 하나로서 1894년 8

20) No. 19. Sill to Gresham, 1894. 7. 2,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칭함) 1894, pp. 28-29. 이하 미국 외교문서의 인용에서 *F.R.U.S.*에 게재된 문서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문건이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에 수록된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F.R.U.S.*의 출처만 명기함.

21) No. 45. Sill to Gresham, 1894. 8. 17, *F.R.U.S., 1894*, pp. 55-56. 청일전쟁시기 조선 지도자들의 미국을 포함한 대외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서 김용찬, “청일전쟁시기 조선 정치지도자들의 대외인식-고종과 대원군을 중심으로”, BK21 고려대 동아시아교육연구단, 『동아시아연구』 1호, 2000년 8월, pp. 125-135를 들 수 있음.

월말 조선 궁정에서 외국대사가 대기실을 통해 배알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접견절차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궁정에서 의전절차의 변화에 대해 쉐 공사는 조선에서 청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몰락하였으며, 일본의 완전한 우위내지 독점적 지위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²²⁾ 이러한 조선내 청일간의 세력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국은 여전히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미 국무성에 통고하는 등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였다.²³⁾

미국은 청국뿐만 아니라 일본이 조선의 외교상의 자주권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 예로서 청일전쟁중 일본이 주미 한국 공사관을 철폐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외교권 침탈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으나, 당시 미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청일전쟁중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조선이 서양에 유일하게 설치한 주미조선공사관을 폐쇄시키고자 기도하였다. 1895년 1월 4일자로 쉐 공사가 국무성에 보낸 전문에 의하면, 일본 공사가 조선 정부에게 워싱턴 한국공사관을 더 이상 개설하지 않으며 워싱턴주재 일본 공사가 한국 관련업무를 담당할 것을 권고하였다. 쉐 공사는 만약 일본측의 권고가 즉각 시행된다면, 워싱턴주재 한국공사관은 곧 매각될 것이며 주미공사도 소환되고 조선 관련문제는 일본공사관에 위임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쉐 공사는 고종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이러한 권고는 국왕인 그에게 매우 불쾌한 것이라고 전해들었으며, 당시 고종은 미국 정부가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했다.²⁴⁾

1895년 1월 8일 주한 일본공사관의 스기무라 후카시(杉村 濬) 서기관이 조선의 外部를 방문하여 주미조선공사의 업무를 주미 일본공사에게 위임할

22) No. 46. Sill to Gresham, 1894. 8. 24, *F.R.U.S., 1894*, p. 56.

23) No. 39. Yang Yŭ to Gresham, 1894. 9. 22, *F.R.U.S., 1894*, pp. 50-51.

24) No. 78.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Jan. 4, 1895.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 p. 259.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쉐 공사는 그 다음날인 1월 9일 그레샴 국무장관에게 전보를 보내, 일본이 워싱턴주재 조선 공사의 소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고종은 불쾌한 상태로서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미공사관이 폐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후 일본공사관은 이러한 주미공사관 폐쇄 음모에 대한 미국측의 비판을 두려워하여 이 계획의 실행을 취소하였다.²⁵⁾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전함에 따라 조선에서 청국 세력이 축출되고, 미국에게도 조청간 기존 조약의 폐기 선언이 통고되었다. 청일전쟁으로 조선에서 청국 세력을 몰아낸 일본과 일부 조선의 정치세력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1895년 시점에서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미 1882년 조미수호조약 체결로 조선의 국제적 독립을 이미 인정한 점을 조선측에 상기시켰다.²⁶⁾

이와 관련된 일화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청일전쟁이후 박정양 등은 고종에게 1895년 6월 6일을 조선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궁궐에서 연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쉐 공사 등 조선 주재 각국 공사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쉐 공사는 이러한 독립기념일 제정을 일본측의 구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초청장에 적힌 문구를 이유로 처음에는 참석을 거절하였다. 이에 당황한 조선 정부는 그의 제안대로 초청장 문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다시 발송하였다. 즉 연회의 개최명분이 “조선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에서 “조선에서 평화가 정착되었으며, 조선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중국측에 의해 포기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그 문구가 바뀌어 다시 전달되었다.²⁷⁾

25) Telegram, Sill to Gresham, Jan. 9, 1895.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 p. 259; 류영익(1992), pp. 290-291.

26) No. 87. Adee to Sill, 1895. 7. 9, *F.R.U.S.*, 1895, p. 971.

27) 당시 러시아측도 그 때까지 조선이 독립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러시아 정부는 조선정부가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독립의 선

이로 미루어 볼 때 쉐 공사는 1895년 6월 6일 독립기념일 선포일로부터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입장 표명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의 체결과정에서부터 미국이 조선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간주하는 태도에 부합되며, 이 문제에 대한 미 본국 정부의 태도와도 일치되었다. 이점은 그동안 쉐 공사의 조선 정치에의 관여를 반대해온 미 국무성이 1895년 7월 9일 주한 쉐 공사에게 전문을 보내서, 현지 공사의 행동을 승인한 점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1895년 6월 6일자로 조선의 독립이 비롯된다는 점을 귀하가 인정하기를 거부한 행동은 승인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조선에 대한 미국 정부가 취하는 입장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 전혀 영향받은 것이 없다. 그 때 이래로 조선의 독립은 우리에게 하나의 확립되어 있는 기정사실이다.²⁸⁾

그렇지만 미 국무성은 이 시기 주한 미국 외교관 및 조선에 체류중인 미국인들의 정치적 개입을 적극 금지하였다. 이러한 본국의 입장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의 주선의 범위에 대해 미 국무성이 1895년 말 쉐 공사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린 점에서 잘 나타난다. 즉 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현지 외교관이 주재국의 내정 상황이 미국의 주선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본국 정부의 소관사항이라고 통고하였다. 이와 더

포 하에 러시아 공사가 조선에서 근무하였다고 밝혔다. No. 120.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June 7. 1895.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 p. 261.

28) 전문에서 위 인용문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Your action in refusing to recognize that Korean independence dates from the 6th of June, 1895, is approved. The position assumed by this Government towards Korea since contracting a treaty with it in 1882 treaty has in no wise been affected by the recent events. Korea's independence since then has been for us an established and accepted fact." No. 87. Adee to Sill, July 9. 1895, *F.R.U.S., 1895*, p. 971.

불어 조선 주재 미국인들에게 내정 개입을 금지하며 선교사 등 본연의 업무에 국한되어 충실할 것을 통고하라고 지시하였다.²⁹⁾ 즉 이러한 국무성의 지시는 당시까지 주한 쉴 공사와 알렌 대리공사의 중재활동과 조선 궁정에의 관여가 1882년 조미수호조약에서 명기한 주선 조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며, 동시에 미국의 주선은 조선의 내정 문제에 대해 행해 질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전시 중립·불개입정책과 현지 공사의 ‘중재’ 활동

조미수호조약의 체결이후 조선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1890년대 중 후반 청일전쟁의 발발로 어떠한 양상으로도든 조선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각 시기별로 자세히 살펴볼 것지만, 미국 본국정부는 청일전쟁당시 전시중립을 지켰으며, 전쟁 발발직 전에 한때 일종의 중재 역할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국의 ‘중립’적 태도속에서도 현지 공사가 ‘개입적’ 양상을 띠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³⁰⁾

미국으로서는 청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기초 자체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지 않았으며, 전쟁 당사자인 청-일 양국에

29) No. 130. Olney to Sill, 1895. 12. 31. *F.R.U.S., 1895*, pp. 974-975; No. 132. Olney to Sill, 1896. 1. 11. *F.R.U.S., 1895*, pp. 975-976.

30) 청일전쟁당시 미국의 중립적 태도 표명과 ‘주선’ 등 대조선 정책의 성격과 전개과정에 대한 주요 기존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Fred Harvey Harrington, “An American View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1905”, Yur-Bok Lee & Wayne Patterson eds., *One Hundred Years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1982*(Alabama: The Univ. of Alabama Press, 1986), pp. 46-67; Jongsuk Chay, *Diplomacy of Asymmetry: Korean-American Relations to 1910*(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pp. 92-107; 김원모, 『한·미 외교관계 100년사』(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pp. 294-306; 김원모, “청일전쟁전후기 미국의 대극동정책이 일본의 한국침략에 미친 영향”, 한국사연구회 편, 『청일전쟁과 한일관계』(서울: 일조각, 1985), pp. 135-169.

대해 ‘엄중하면서도 우호적인 중립적(an impartial and friendly neutral)’ 태도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중립의 이면에는 당시 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었다.³¹⁾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영, 불, 러, 독 등 서구 열강의 공동 중재 권유에 대하여 1894년 10월 12일 어떠한 공동 개입도 거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청의 중재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의 중재는 교전당사국인 청과 일본에 의해 수락가능한 경우에 한해 고려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미국의 중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형태 등으로 추구될 수 있다고 표명하였다.³²⁾

청일전쟁 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의 최고 결정자인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이나 그레샴(Walter Q. Gresham)과 올니(Richard B. Olney) 국무장관의 경우,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조선 등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었다.³³⁾ 미 국무성으로서도 1894년 한반도에서 청일간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주한 미공사관에 조선의 평화적 상태의 보존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를 일종의 ‘주선’ 역할을 담당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쉘 주한 미국 공사는 아래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일련의 중재노력을 시도하였다.

한반도에서 청-일 양측 군대가 긴박하게 대치하자 그레샴 국무장관은 1894년 6월 22일로 워싱턴 주재 조선공사 이승수(李承壽)로부터는 조미수호조약의 ‘주선’ 조항에 따라 미국의 공정한 권고와 우호적 개입을 요청받

31) No. 66. Gresham to Dun, 1894. 11. 6, *F.R.U.S., 1894*, p. 76.

32) No. 67. Gresham to Denby, 1894. 11. 6, *F.R.U.S., 1894*, p. 76.

33) Oh Bonnie B (1979), *op. cit.*, p. 93; 이민식, 『근대한미관계사』(서울:백산자료원, 2001), pp. 583-587. 그레샴 국무장관은 일리노이주 출신으로서 인디애나 주 공화당원으로 활약하다가 1892년 민주당에 입당한 후 포스터 국무장관(John W. Foster, 1892. 6. 29-1893. 2. 23 재임)의 후임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올니 국무장관은 매사추세츠 주 출신으로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1895년 청일전쟁의 종전후 그레샴이 죽자 그 뒤를 이어 국무장관에 취임하였다. 이민식(2001), 위의 책, pp. 583-587.

았다. 이에 그레삼 국무장관은 1894년 6월 22일자로 쉴(John Mahelm Berry Sill) 공사에게 “조선 및 조선 국민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 관심에 비추어 보아, 조선에서 평화적 상태의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였다.³⁴⁾

조선에 신임 공사로 부임한 지 몇 달 안된 쉴 공사는 본국으로부터 이같은 훈령을 받기 이전에 청, 일 양국의 출병이 조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중재활동을 해왔다. 그는 실제로 조선에서 평화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위 국무성의 지시에 따라 이후에도 중재활동을 계속 기울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³⁵⁾

1894년 6월 16일 제물포에 상륙한 3,000명의 일본군이 외국인 조계에서 외국의 동의없이 주둔하자, 쉴 공사는 일본군의 이러한 행동은 조선주재 각국의 조약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고 6월 18일 조선주재 서구 공관의 대표들과 공동으로 일본에 항의하였다.³⁶⁾ 그 후 쉴 공사는 청, 일 양군의 동시철병을 위해 조선 정부의 중재요청 서한을 작성하는데 관여하였다. 조선 정부는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만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1894년 6월 24일 서울주재 미, 영, 러, 불, 독의 5개국 공사들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³⁷⁾ 1894년 6월 하순 쉴 공사는 주한 영국, 러

34) No. 14. Uhl to Sill, 1894. 6. 22, *F.R.U.S., 1894*, p. 22; No. 15.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June 25. 1894.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p. 333. 당시 63세의 미시간주 출신의 교육자인 쉴 공사는 미시간대학 이사로 재직시 이 대학출신이며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디킨슨(Don M. Michigan, 클리브랜드 제1기 행정부의 체신청 장관 역임)과 울(Edwin F. Uhl, 클리브랜드 제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서리 역임)의 추천에 의하여 조선 공사직에 임명되어 1894년 4월 조선에 부임하였다. Oh Bonnie B(1979), op. cit., pp. 92-93; 이민식(2001), 앞의 책, pp. 591-593.

35) No. 16. Sill to Uhl, June 25. 1894, *F.R.U.S., 1894*, p. 22;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p. 333.

36) No. 14. Sill to Secretary of State, June 18. 1894. *F.R.U.S., 1894*, pp. 29-21;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 p. 331.

37) No. 16. Sill to Gresham, 1894. 6. 25, *F.R.U.S., 1894*, p. 22; No. 15. John M. B.

시아, 프랑스 외교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청국과 일본에 조선에서의 공동 철병을 요청하였다.³⁸⁾ 이와 관련, 쉘 공사는 본국 정부에 조선주재 다른 외교관들과 협력하여 중재에 나설 의향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 본인은 가능하다면 현 난국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본인의 조정을 가까이 행사할 것이다. 아울러 본인은 귀하의 통지를 받은 즉시, 본국 정부에 상세한 내용을 전보로 알렸음을 알린다. 본인은 본국 정부가 호의적 주선을 조선에 위하여 행사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또한 외교기관의 다른 대표들과 연합하여 청, 일 양국이 동시 철병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³⁹⁾

그러나 서구 4개국의 동시 철병 권고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894년 6월 26일 쉘 공사는 청의 袁世凱측으로부터 일본이 철병을 거부하는 한 청군도 조선에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고받았다.⁴⁰⁾ 그리고 일본 측의 오토리 다이스케 공사는 조선 정부와 정책의 변화가 일본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되지 않는 한 일본군대는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⁴¹⁾ 그럼에도 쉘 공사는 조선에서 평화적 상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르면서 청일간 무력충돌의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청일간의 전쟁이 임박해지자 조선 정부는 1894년 7월 5일 워싱턴 주재 이승수(李承壽) 공사를 통해 다시 미국 정부에게 조선내 청일의 대립을 조

Sill to Secretary of State, June 25, 1894.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p. 333.

38) No. 16. Sill to Gresham, 1894. 6. 25, *F.R.U.S., 1894*, p. 22.

39) No. 16. Sill to Gresham, 1894. 6. 25, *F.R.U.S., 1894*, p. 22; No. 15.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June 25, 1894.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pp. 333-334.

40) No. 18. Sill to Gresham, June 29, 1894, *F.R.U.S., 1894*, p. 25; No. 16. Sill to Secretary of State, June 29, 1894.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p. 335.

41) No. 18. Sill to Gresham, June 29, 1894, *F.R.U.S., 1894*, p. 26.

정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1894년 7월 7일 청국 정부도 미국에게 서구 열강과 공동으로 일본에게 조선에서의 철병을 요청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와 관련, 미 국무성은 청국주재 덴비(Denby) 대사로부터 청국측이 영국과 러시아에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선'을 요청하였으며, 무력행사대신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한다는 보고를 받았다.⁴²⁾

그러나 그레섬 국무장관은 1894년 7월 5일 일본주재 던 공사로부터 청일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조선 문제로 중재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미 국무성은 '불개입' 및 중립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미국이 청, 일간 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이승수 주미공사를 통해 조선에 통고하였으며, 쉘 공사에게도 본국 정부로서는 강력히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고하였다.⁴³⁾ 이러한 미국의 중립적, 비개입 태도는 1894년 7월초 그레섬과 다테노 고조(建野郷三) 주미 일본공사간 회견을 통해 일본에도 전달하였다. 그리고 영국이 미국에 중재 의사를 타진하자, 미국은 이를 거절하면서 공동개입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의 중재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은 공동 개입이 불가함을 통고하면서, 청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통고하였다.⁴⁴⁾

당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의향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참여없이 사실상 영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의 공동 개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 국무성의 대일 불개입 결정은 사실상 이후 일본이 청국

42) No. 21. Denby to Gresham, 1894. 7. 6, *F.R.U.S., 1894*, p. 30.

43) 당시 그레섬 장관의 통고 내용중 미국의 대한 정책을 잘 반영하는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I told Korean Minister here this Government could not intervene forcibly. I did not advise him that Korea should protest and notify foreign powers..." Telegram, Gresham to Sill, July 9, 1894, *F.R.U.S., 1894*, p. 31;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p. 337.

44) No. 28. Gresham to Bayard, 1894. 7. 20, *F.R.U.S., 1894*, pp. 36-39.

과의 결전을 서두르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적이 되고 유럽 열강들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자, 미국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었으며 1894년 11월 17일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청일전쟁의 종전을 위해 청과 일본간에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청일 양국간 강화협상의 경유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후 강화협상의 결과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⁴⁵⁾

4. 구한말 미군의 파견과 한미관계의 전개

(1) 주한 미공사관 호위 병력의 파견과 주한 미국공사의 관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일전쟁당시 미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현지 공관과 조선에 체류중인 미국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극소수의 병력을 잠시 조선에 파견하였다. 1880년대 후반이후부터 간헐적으로 현지 공사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소수의 미국 병력은 당시 주한 미 공사관 호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담당하면서도 조선에 대한 청, 일 등 외세의 압력을 견제하고 고종 등 조선 궁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하에서는 1890년대 중반 청일전쟁시기를 중심으로 주한 미공사관 호위병력의 파견과정과 주한 미공사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 보겠다.

45) Department of State U. S. A., *A Historical Summary of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84-1962* (Washington: Historical Office Bureau of Public Affairs, 1962), pp. 13-14. 청일전쟁 당시 서구 열강의 태도와 중재과정, 그리고 강화조약의 체결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 대해서는 김용구, 『세계외교사 전정판』(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 378-401; 최문형(2001), 앞의 책, pp. 89-143 참조.

청일전쟁이전에도 조선의 위기사 주한 미 공사가 미군의 파병을 요청한 적이 있으며, 이에 관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86년 조선에서는 청국에 의해 국왕인 고종을 폐립하고 대원군을 추대하려는 음모설이 널리 퍼지고, 한로밀약설을 문죄하기 위해 대규모 청국함대가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 온다는 소문이 풍미하였다. 당시 주한 미공사관과 조선 궁정 양쪽 모두에 깊이 관련된 알렌(Horace N. Allen)은 이 소문을 듣자 미국 군함의 조선 파견을 주선했다. 그의 노력 등에 힘입어 1886년 8월 24일 미국 군함 오시피호가 제물포에 도착함에 따라 청국 군함이 조선에 입항하여 군사적 시위를 하려던 효과가 상쇄되었다. 며칠 후 미국의 오시피호의 함장과 20명의 해병대가 서울 주한 미공사관에 도착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국의 간섭과 위협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청국의 통제하의 조선 정부가 미 해병대의 파견에 항의하자, 미 해병대는 맥그린지 제독의 서울 방문을 위한 호위병의 구실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⁴⁶⁾

청일전쟁의 발발 직전시기인 1894년 5월에도 쉴 공사는 본국 국무성으로부터 조선의 조류와 연안 측량조사를 지시받았다. 이에 쉴 공사는 조선 정부에는 이에 관련된 기록이 없다고 보고하면서 조선 항구에서 조선의 조류와 연안측량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미국 영사나 관리들이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위의 자료 수집을 미 해군 장교들에게 맡길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⁴⁷⁾

청일전쟁의 개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자, 쉴 공사는 조선에 체류중인 선교사 등 미국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본국에 미국 군함의 파견을 요

46) *Horace Newton Allen's Diary*, 1886년 9월 5일, 10월 25일자, 김원모 완역, 『구한말 격동기 비사:알렌의 일기』(서울: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pp. 124-125; Harrington, Fred H., *God, Mammon and the Japanese: Dr.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44); 이광린 역, 『개화기의 한미관계-알렌 박사의 활동을 중심으로』(서울:일조각, 1979), pp. 226-232.

47) No. 8.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May 28. 1894.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 pp. 203-204.

청하였다.⁴⁸⁾ 그러나 쉴 공사는 스커렛(Skerrett) 제독으로부터 미 해군의 대부분이 베링해에서 근무중에 있어서 제물포로 바로 군함을 파견하기는 어렵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 대신 스커렛 제독은 쉴 공사에게 미 공사관의 보호를 조선 정부에 요청하며, 그동안 빠른 시일내로 미 군함이 도착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 쉴 공사는 1894년 6월 1일 국무성에 영국, 프랑스, 중국 및 일본이 제물포에 함대를 파견함을 설명하면서, 조선에서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미국인 거류지를 안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시 군함 한 척이 파견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⁴⁹⁾

이에 미 국무장관 그레샴은 조선의 정세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에 주한 미 공사관의 요청에 의해 현지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스커렛(Skerrett) 제독 휘하의 미 태평양 함대 소속의 ‘볼티모어(Baltimore)’호를 파견하도록 조치하였다. 위 볼티모어 호는 1894년 6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하였으며, 스커렛 제독은 6월 12일 두 명의 장교와 함께 서울로 왔다. 그 다음날인 6월 13일 미군 일행은 고종을 공식 접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고종은 미국 군함이 조선에 정박중인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6월 15일 미 제독은 그의 함정으로 돌아갔으나, 미 공사에게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머무르겠다고 약속하였다.⁵⁰⁾

그후 쉴 공사는 당시 스컬렛 제독을 설득하여 주한 미 공사관의 호위 병력을 12명에서 120명으로 증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스컬렛 제독이 조선을 떠날 의향을 전달하자, 쉴 공사는 조선정부가 사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과 미 공사관, 그리고 현지에 체류중인 약 80명의 미국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쉴 공사는 스컬렛 제독을 다시 설득하여 그의 출항을 연기시켰다. 결국 스커렛 제독이 출항함에 따라, 쉴 공사는 자신이 모욕적이며 매우 위험

48) No. 9. Sill to Gresham, 1894. 5. 17, *F.R.U.S., 1894*, pp. 17-18.

49) No. 11. Sill to Gresham, June 1. 1894, *F.R.U.S., 1894*, pp. 18-19.

50) No. 13. Sill to Gresham, June 18. 1894. *F.R.U.S., 1894*, pp. 20-21.

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위기의식을 느꼈다.⁵¹⁾

이후에도 조선에서의 청-일간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쉴 주미공사는 공사관 병력을 증원해 줄 것을 다시 본국 정부에 요청하였다.⁵²⁾ 그리하여 1894년 7월 12일 제물포에 미 군함 모노카시(Monocacy)호가 도착하였으며, 함대 사령관 임페이(Impey)는 한반도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에 있어 쉴 공사와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⁵³⁾ 곧 이어 엘리엇(George Fielding Elliott) 해병대 대위의 인솔하에 50여명의 선원 및 병사들이 볼티모어(Baltimore, 함장 데이<Day>) 순양함을 타고 1894년 7월 24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이후 엘리엇 대위의 지휘하에 50여명의 병력이 1894년 7월 25일 서울에 파견되어 쉴 공사 등 주한 미공사관을 호위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얼마있지 못하고 철수하였다.⁵⁴⁾

그후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개전되었어도 미국은 조선에 추가로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일전쟁 강화조약의 체결이후에는 미국은 조선에서 자국 군함을 철수시켰으며, 그 대신 쉴 공사에게 조선 미 공사관내 미국인 보호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 볼 것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그 이유로서 미 국무성은 1895년 7월 8일 쉴 공사에게 미 해군성으로부터 서울의 주한 미 공사관을 수비하기 위해 체류중인 해군 장교와 사병용 막사를 신축할 예산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미 공사관의 보호를 미 아시아함대 총사령관에게 요청하지 말며, 유사시 조선내 미 공사관 직원 및 미국 시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1) No. 13. Sill to Secretary of State, June 18, 1894. *F.R.U.S., 1894*, p. 20; No. 16. Sill to Gresham, June 25, 1894. *F.R.U.S., 1894*, pp. 22-23; No. 23 & 24. Telegram, Sill to Gresham, July 8, 1894. *F.R.U.S., 1894*, p. 31.

52) No. 18. Sill to Gresham, 1894. 6. 29,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894*, pp. 25-26.

53) No. 27. Sill to Gresham, 1894. 7. 18, *F.R.U.S., 1894*, pp. 31-33.

54) No. 30. Sill to Gresham, 1894. 7. 26, *F.R.U.S., 1894*, p. 41; Sweetman, Jack, *American Naval History: An Illustrated Chronology of the U.S. Navy and Marine Corps, 1775-Present*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pp. 100-101.

1882년 조미수호조약에 따라 조선 정부에 요청하라고 훈령하였다.⁵⁵⁾ 이와 같이 미국은 본국 정부의 무관심과 현실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 및 주둔시키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그나마 주둔시켜온 몇 십명의 미 공사관 호위병력마저 철수시킴으로써 더 이상 미국의 대조선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2) 청일전쟁의 종전이후 미국 공사의 개입을 둘러싼 갈등과 이견

청일전쟁의 종전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진출이 본격화되었지만 오히려 국무장관 등 미 국무성은 조선의 정세에 대하여 기존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였다. 반면, 현지의 쉘 공사는 조선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독점적 진출에 저항하였으며, 조선 정부에 문호개방을 촉구하였다.

그 예로서 일본이 외국인 공동 거류지역에 인접한 제물포내에 자국인 거류지를 확대하는 등 독점적 권리를 양여받자, 1895년 5월 쉘 공사를 포함하여 조선주재 서구 열강의 외교관들이 공동으로 조선 外部에 항의하였다. 당시 주한 미국 공사는 조선에서 일본의 철도 건설계획 자체에는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측이 조선의 모든 철도에 대한 권리를 50년동안 양여받는 것에는 반대하였다.⁵⁶⁾

청일전쟁의 종전이후 조선에 체류중인 소수의 미국인 군사교관은 당시 조선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 등에 의해 그 활동변경이 크게 제약되었다. 그럼에도 명성황후 시해사건 직후 1895년 10월 미 군사교관 윌리엄

55) No. 86. Alvey A. Adey to John M. B. Sill, July 8. 1895.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 p. 136.

56) No. 115.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May 25. 1895. *Korean-American Relations*, Volume II, pp. 260-261.

M. 다이(William M. Dye)는 조선 궁성 수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895년 11월 28일 춘생문 사건 당시 저녁 궁궐 수비대의 다이(Gen'l Dye)가 관여하는 등 미국인 군사교관의 활동을 둘러싸고 미일간 갈등과 마찰이 커졌다.⁵⁷⁾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발한 이후 알렌 대리공사는 일본인의 만행에 격분하여,⁵⁸⁾ 일본인이 민비를 살해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일본의 미우라(三浦) 공사가 관여하였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알렌 대리공사는 일본을 제외한 주한 각국외교관 회의에 참석하여 사태를 협의하였으며 조선주재 영, 러, 불 공사들과 함께 일본에 고종을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에도 알렌 대리공사는 당시 고종에게 충성을 다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 계속 지원하였으며, 당시 6명의 조선인 저명인사들이 미 공사관으로 피신하자 이들의 부상을 치료토록 하였다. 알렌 대리공사는 을미사변후 성립된 친일내각이 1895년 10월 발표한 廢妃의 廢位詔勅에 정면으로 반발하였으며, 이후 주한외교사절을 주도하여 그 詔勅을 조선 국왕이 직접 내린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⁵⁹⁾

한편 을미사변중 휴가를 마치고 서울에 귀임한 쉴 공사 역시 일본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1895년 10월 26일자 전문을 통해 일본측이 명성황후의 시해에 관여하였으며, 자신의 보좌관인 알렌의 조치들이 훌륭했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⁶⁰⁾ 당시 쉴 공사는 일본이 을미사변 이전상태

57) No. 177. Sill to Secretary of State, Dec. 1. 1895.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pp. 137-138; Harrington 저·이광린 역(1974), p. 284.

58) 을미사변당시 알렌의 행동에 대해서는 Harrington 저·이광린 역(1974), pp. 278-297를 참조하기 바람.

59) Allen, Horace N., *Things Korean: A Collections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N.Y.: Fleming H. Revell, 1908). 신복룡 역, 『조선건문기』 (서울: 평민사, 1986), pp.186-187; Harrington(1944)·이광린 역(1973), 앞의 책, pp.289-292.

60) Telegram. Sill to Olney, Oct. 26. 1895, *F.R.U.S., 1895*, p. 972.

로 정세를 되돌리려하지 않으며, 고종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보았다. 이에 쉴 공사는 러, 영, 불 공사와 함께 1895년 11월 9일 일본 공사에게 ‘사태회복의 책임을 지고 국왕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⁶¹⁾

을미사변이후 1895년 11월 28일 춘생문 사건, 즉 고종에 충성을 다하는 일부 인사들이 일본인들의 포위 하에 있는 고종을 궁궐밖으로 移御시키려고 궁궐에서 격돌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중 생존한 친국왕과 8명이 주한 미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사건 당일인 1895년 11월 28일 저녁 쉴 공사는 알렌 서기관 및 조선주재 러시아공사와 함께 궁궐로 가는 도중에 2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고종의 호출을 받은 영국인 의사를 동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에게 궁궐 출입허가를 위해 자신의 카드와 대사관용 출입증표를 건네주었다.⁶²⁾ 그리고 쉴 공사는 공사관으로 피신해온 이들 조선인들의 신변이 위태로우므로 국외로 피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쉴 공사는 본국 정부에 상하이로 향해 곧 출항할 예정인 요크타운(Yorktown)호가 조선에 잠시 들리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 배에 위 8명의 탑승을 허락하도록 미국 함대 총사령관에게 승인을 받아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⁶³⁾ 이와 같이 당시 미공사관은 이들 반정부인사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였으며 조선정부의 인도 요구 전에 피난정객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미국 군함의 승선을 허가해줄 것을 본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전보를 받은 올니 미 국무장관은 1895년 12월 2일자로 전보를 보내, 주한 미 공사관에 피신중인 조선인들은 조선 국내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선정부로부터 기소된 상태이므로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올니 국무장관은 요크타운(Yorktown)호를 활용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으며, 쉴 공사에게 조선 국내 정세에 개입해서는

61) Telegram. Sill to Olney, Nov. 9. 1895, *F.R.U.S., 1895*, p. 972.

62) No. 177. Sill to Secretary of State, Dec. 1. 1895.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pp. 137-138.

63) Telegram. Sill to Olney, Dec. 1. 1895. *F.R.U.S., 1895*, p. 974; No. 189. Sill to Olney, Jan. 20, 1896, *F.R.U.S., 1895*, p. 977.

안되며, 공사의 업무를 조선내 미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에 엄격히 제한할 것을 지시하였다.⁶⁴⁾

을미사변의 발발이후부터 1896년 1월에 걸쳐 미 국무장관은 주한 미 공사에게 일련의 전문과 전보를 통해 주한 미 공사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조선의 내정에 관여되는 것을 엄격히 삼가라는 내용의 경고와 불개입 훈령을 내렸다. 결국 쉴 공사로서도 1896년 1월 을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앞으로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보고함으로써, 본국 정부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⁶⁵⁾

그렇지만 쉴 공사는 을미사변이후 일종의 공포가 조선에 팽배하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주한 일본공사에게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쉴 공사는 조선 정세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이 조선에서 무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⁶⁶⁾ 그리고 알렌의 경우에도 일본의 세력증대를 직접 저지하려는 시도들이 국무성의 반대에 부딪치자 그 대안으로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통해 일본을 견제하며 조선내 미국의 이득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⁶⁷⁾

그후 조선내에서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증대하며 러·일간의 긴장이 고조되어가자, 미 국무성은 1897년 11월 19일 주한 미 공사에게 절대적으로 삼가고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조선 정세의 관

64) Telegram. Olney to Sill, Dec. 2. 1895. *F.R.U.S., 1895*, p. 974.

65) Telegram. Olney to Sill, Jan. 11. 1896. *F.R.U.S., 1895*, p. 975; Telegram. Sill to Olney, Jan. 13, 1896, *F.R.U.S., 1895*, p. 976.

66) No. 177. John M. B. Sill to Secretary of State, Dec. 3. 1895.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II, pp. 139-140.

67) 그 예로서 알렌은 고종과의 친분 관계를 깊게 맺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관파천에 관여하였으며, 雲山금광 채굴권과 경인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으며, 貞洞派로 불리우는 친미파의 입각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관련된 설명은 Harrington(1944)·이광린 역(1973), 앞의 책, pp. 130-176, 299-318을 참조하기 바람.

여를 견제 내지 금지하였다.⁶⁸⁾

5. 맺 음 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한말 미국은 중국 등 이 지역국가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문호개방 정책의 실시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나갔다. 그리고 미국은 이 지역내 외교관, 선교사 및 상인 등 미국인의 활동 지원, 해상무역로의 확보 및 필리핀 등 주요 전략거점의 안전 확보 등을 중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해군함정과 소규모 병력을 파견하였다. 19세기말까지도 동북아의 지정학적, 군사적 관심이 증대되었지만, 미국무성과 해군성 등 정책결정자들은 미국 본토에 인접한 해상지역과 대서양의 방위를 우선시하였다. 당시 미국의 군사력이 대서양과 본토에 집중되어 있어,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었다.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러일전쟁이전까지는 러시아의 남하 및 팽창을 경계하여 그 견제세력으로서 일본을 활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중립을 표방하였으며,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한말 한미관계를 보면, 1882년 조미수호조약의 체결이후 위 조약중 미국의 '주선' 조항에 의거하여 조선은 미국에 크게 기대를 걸고 접근하였으나, 반면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정책은 무관심과 방관적 태도를 취하였다. 더구나 당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파악하기에 조선에는 적극 개입할만큼 커다란 군사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비교해 볼 때도 조선의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일전쟁시기는 한반도가 주변 열강의 전쟁터가

68) Department of State(1962), op. cit., pp. 14-15.

되는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발발 직전 미 국무성이 현지 주한 미국 공사에게 중재노력을 기울이라고 훈령을 내린 것 이외에 특별하게 청일간 전쟁을 예방하거나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성 관리들이 조선측과 청국측의 중재요청, 그리고 영국 등 서구 열강의 공동 중재 제의를 거절한 점은 조선 문제에 대해 무관심과 '비개입주의'적 태도를 취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시기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중요성을 띠는 것으로서, 청일전쟁의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은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가임을 인정할 주요 강대국이었으며, 청, 일 등 주변 외세가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선의 자주외교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려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한 쉐과 알렌 등 현지 주한 미국공사들이 청일전쟁 시기 미 본국정부의 불간섭 지시에 대립되면서도 일련의 중재활동을 전개하고 일본의 대조선 침략적 진출에 저항하였다. 그리고 주한 미국 외교관들이 현지 공관의 보호와 조선내 미국인의 신변 보호를 명목으로 미군 병력의 파견을 요청한 점은 일종의 '개입주의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규모이지만 조선에 파견된 미군 병력의 존재는 미 공사관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1890년대 중후반 고종의 신변보호와 일본 등 외세의 정치적 간섭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미군 병력의 파견과 현지 공사의 조선 궁정에의 관여도 미 해군성이 주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우며 일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국무성의 견제 및 반대 등으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웠다.

청일전쟁이후부터 을미사변 당시까지 미 본국정부의 방침과 현지 주한 미국공사들의 활동이 갈등과 마찰을 겪는 상황에서 고종 등 조선측은 주한 미공사와의 유대를 통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대가로 금광, 철도부설권 등 경제적 특혜를 미국인에게 부여하였다. 하지만 현지 외교관들의 자율성과 재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들이 본국 정부의 훈령과 방침을 계속 어기면서까지 조선을 도와주기 힘들며, 이러한 주한 미국공사들의 관

여의 이면에는 조선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 전제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미 국무성이 주한 미공사의 정치적, 외교적 개입을 금지시키고 1882년 조미수호조약에서 언급한 미국의 '주선'의 범위와 시기에 대한 결정은 미 본국정부가 내리며, 조선 국내정치문제에 관련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고한 점은 당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조선에 진출한 미국 선교사나 주한 미국공사들이 고종의 신변을 보호하고 반일적 태도를 취했던 것에서 한국이 도움을 받은 점은 쉴과 알렌 등 주한 미국공사들이 당시 한국의 국난 극복과 초창기 한미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인 동시에 이후 조선의 지도층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해 일종의 환상과 기대를 가지게 만든 주요 요인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 변천을 보면, 러일전쟁이후 기존의 우호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일본을 미국에 위협가능성이 큰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비하는 군사전략 및 정책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시점도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보호조약 이후로서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당시 일본과 외교적 화해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피해갔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구한말 조선이 취해 볼 수 있는 외교정책 구상, 즉 일본 등 외세의 침략적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활용(用美)' 구상은 당시 미국 정부의 대아시아정책과 미군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웠다.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구한말 미국의 조선을 포함한 대아시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현지 주한 공사들의 활동 양상에 비추어 볼 때, 19세기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미 외교의 효과적 추진과 바람직한 한미 군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측의 외교, 국방정책상의 의도와 현실적인 수단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며,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미 외교, 국방정책상의 구체적 수단들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구한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대한 전략의 전개과정이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은 구한말 과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21세기 현재에도 외교안보 및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결정과 전략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KCS I